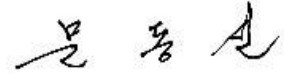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7월 16일

군산시 규칙 제 509호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주민자치센터

제2조(이용시간)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이용시간은 각 호의 시간 안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민원 행정실 내에 설치한 시설의 이용시간은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1. 평 일 : 09:00 ~ 22:00까지

2. 토요일 : 09:00 ~ 18:00까지

②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프로그램 운영) ① 읍·면·동장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인근 읍·면·동과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읍·면·동장은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읍·면·동,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참여주민과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강좌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이용절차) 자치센터 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읍·면·동장이 정한다.

제5조(수강료 등) ① 위원회는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운동시설 사용료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② 수강료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 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수강료등의 환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다.

제6조(수강료등의 사용원칙) 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
2. 자치센터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3. 자치센터 시설 개선비
4. 자치센터 공공요금 등 일반 수용비
5.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관련 비용
6. 조례 제11조제5항과 관련한 시설 보험료
7. 그 밖에 위원회 주도로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5조의 자치센터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단,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 사용금지)

제7조(수강료등 수입·지출의 공개 등) ① 위원회는 수강료등의 운영에 대하여 반기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여야 한다.

② 10만원 이상의 각종 경비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주민자치위원 2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수강료 등과 관련된 자치센터 회계관련 서류의 문서보존기간을 5년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① 조례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운영, 보조, 강의 활동 등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봉사활동비와 실비,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이용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제10조(변상조치)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자치센터 자료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기준은 현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1조(보고 등) 읍·면·동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별지 제4호 서식)
2. 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 제 3 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2조(주민자치위원 모집) 조례 제17조제2항의 공개모집에 따른 모집공고는 위원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공고, 게시, 읍·면·동 홈페이지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수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고, 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제13조(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 읍·면·동장은 차기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5명~9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장이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4조(위촉장 교부) 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위촉시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위원 위·해촉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소집)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운영 일지 등)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 종합운영일지(별지 제11호 서식)
2. 자치센터 프로그램 출석부(별지 제12호 서식)
3.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별지 제13호 서식)

제17조(운영세칙)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환불 신청서

|  |       |      |         |  |
|--|-------|------|---------|--|
| 신 청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 직 업   |      |         |  |
|  | 연 락 처 |      |         |  |
|  | 주 소   |      |         |  |
| 취소사유   |       |      |         |  |
| 환불신청액  | 금     | 원정(W | )       |  |
| 입금계좌번호   | ( )은행 |      | 예금주     |  |
| <p style="text-align: center;">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b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군 산 시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p> |       |      |         |  |

----- 절 취 선 -----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환불액 결정 통보서

|   |       |          |     |
|---|-------|----------|-----|
| 신 청 인   |       | 생 년 월 일  |     |
| 환불결정액   | 금 원   | 결정액 산출내역 |     |
| 입금계좌번호  | ( 은행) |          | 예금주 |
| <p style="text-align: center;">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군산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p> |       |          |     |

[별지 제3호 서식]

군산시 ○○○ 읍·면·동 공고 제 호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운영개요

-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운영장소 :
- 운영 프로그램 : 개 강좌, 개반
- 프로그램 강사 : 명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 총 괄

| 수입 | 지출 | 집행잔액 | 비 고 |
|----|----|------|-----|
|    |    |      |     |

- 수강료 수입내역

| 연번 | 프로그램명 | 수입금액 | 산출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수강료 지출내역

| 연번 | 지출내용 | 지출금액 | 산출내역 | 비고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별지 제4호 서식]

# 000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 계획

I. 사업목적

II. 사업개요

III. 세부 추진 내용

가. 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명, 시간, 수강료, 강사명 등 포함)

| 프로그램명 | 요일 | 시간 | 모집인원 | 수강료 | 강사명 |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주민자치 기능 및 문화복지 편익 기능

다. 기 타

IV. 소요예산

| 항 목 | 예산액(원) | 산출기초 | 비 고 |
|-----|--------|------|-----|
|     |        |      |     |
|     |        |      |     |
|     |        |      |     |

V. 기타사항

VI. 기대효과

※ 세부 계획은 별도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 000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서

- I. 총 평
- II. 운영내용
- III. 주요추진사항
1. 000000사업
    - 추진기간
    - 사업개요
    - 추진성과
    - .....
  2. 000000사업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결과

| 프로그램명 | 요일 | 시간 | 모집인원 | 월평균<br>수강인원 | 수강료 | 강사명 |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V. 자치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 내역

| 수 입 |     | 지 출 |     | 잔 액 | 비 고 |
|-----|-----|-----|-----|-----|-----|
| 분야별 | 금 액 | 분야별 | 금 액 |     |     |
|     |     |     |     |     |     |
|     |     |     |     |     |     |

- V. 문제점 및 대책
- VI. 건의사항
- VII. 미담·수범사례
- VIII. 기 타
- ※ 세부 내용은 별도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추천(신청)서

|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 주 소            |  |        | 학 령  |  |
| 전화번호           |  | 직 업    |      |  |
| 주요경력           |  |        |      |  |
| 추천사유<br>(신청사유) |  |        |      |  |

위의 사람을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후보자로 추천(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천(신청)인 : (인)

군산시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 위 축 장

주소 : 군산시 읍·면·동 번지

성명 :

귀하를 군산시 000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주  
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 00읍·면·동장



<별지 제10호 서식>

<표지>

##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회 (정기회, 임시회)】

군산시 00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별지 제11호 서식>

## 주민자치센터 종합 운영일지

|        |     |    |      |
|--------|-----|----|------|
| 결<br>재 | 담당자 | 담당 | 읍면동장 |
|        |     |    |      |

운영일자 :    년    월    일(요일)

프로그램 이용현황

(단위 : 명)

| 이용<br>구분 | 총 계 |    | 이용자 현황 |   |   |           |            |    |         |    |    | 비고 |
|----------|-----|----|--------|---|---|-----------|------------|----|---------|----|----|----|
|          |     |    | 성 별    |   |   | 참 여 계 층 별 |            |    |         |    |    |    |
|          | 누계  | 당일 | 계      | 남 | 여 | 계         | 어린이<br>청소년 | 주부 | 직장<br>인 | 노인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구분란은 시설(인터넷검색, 체력단련실, 강좌 등)과 프로그램별로 구분 기재

시설사용 현황

| 구 분   | 총계 | 성 별 |   |   | 시 설 별 |    |    |    |    |    |
|-------|----|-----|---|---|-------|----|----|----|----|----|
|       |    | 계   | 남 | 여 | 계     | ○○ | ○○ | ○○ | ○○ | ○○ |
| 일계/누계 | /  | /   | / | / | /     | /  | /  | /  | /  | /  |

※ 시설별은 인터넷검색, 체력단련실, 강의실, 기타 읍·면·동별 시설 등을 구분하여 기재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 등 활동사항

-  
-

기타사항(운영상의 특기사항, 보도자료제공, 문제점 등)

-  
-

※ 운영일지는 시설·일자별로 작성하며, 일반이용자 및 일시 이용자 경우 등 포함

※ 별도 서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서식에 준하여 만들어 사용



<별지 제13호 서식>

○○읍·면·동 제 호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서식)

현황

○ 위원회명 : 군산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 위원장성명 :

○ 위원구성 : 명 (남 명, 여 명)

위원별 인적사항

| 연번 | 직위   | 성명 | 성별 | 주소(00리/00동) | 위촉일자 | 임기만료일자 | 비고 |
|----|------|----|----|-------------|------|--------|----|
| 1  | 위원장  |    |    |             |      |        |    |
| 2  | 부위원장 |    |    |             |      |        |    |
| 3  | 간사   |    |    |             |      |        |    |
| 4  | 위원   |    |    |             |      |        |    |
| 5  | 위원   |    |    |             |      |        |    |
| 6  | 위원   |    |    |             |      |        |    |
| 7  | 위원   |    |    |             |      |        |    |
| 8  | 위원   |    |    |             |      |        |    |
| 9  | 위원   |    |    |             |      |        |    |
| 10 | 위원   |    |    |             |      |        |    |
| 11 | 위원   |    |    |             |      |        |    |
| 12 | 위원   |    |    |             |      |        |    |
| 13 | 위원   |    |    |             |      |        |    |
| 14 | 위원   |    |    |             |      |        |    |
| 15 | 위원   |    |    |             |      |        |    |
| 16 | 위원   |    |    |             |      |        |    |
| 17 | 위원   |    |    |             |      |        |    |
| 18 | 위원   |    |    |             |      |        |    |
| 19 | 고문   |    |    |             |      |        |    |
| 20 | 고문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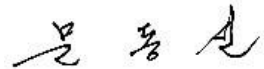
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 . .

군산시 ○○읍·면·동장(직인)

군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산시장



2012년 7월 16일

군산시 훈령 제 291호

# 군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군산시(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서 근로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정수와 채용절차, 근로조건, 복무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채용”이라 함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채용권자”라 함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채용·휴직·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지는 시장을 말한다.
5. “관리부서”라 함은 근로자의 정수와 총괄 기능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6. “예산부서”라 함은 근로자의 보수 등의 예산을 편성 및 운영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7. “사용부서”라 함은 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를 관장하는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말한다.

8. “사용부서의 장”이라 함은 시 본청은 관·과장,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 소속기관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근로자의 직종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노무원 :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공사 작업인부 등 주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현장지도 단속 감시 인력, 부속실운영, 방문 민원인 접대·안내 등 단순잡역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민원제증명 발급, 행정 전산프로그램 운영, 문서수발 및 정리, 연구·실험·검사·진료 업무보조 등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분야를 보조하는 행정보조 인력

2. 도로보수원 : 도로시설의 보수·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3. 환경미화원 : 폐기물 수거·처리,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4.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의해 채용되어 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5. 청원산림보호직원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되어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6. 무기계약전환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중 무기계약 전환인력

② 사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을 임의로 달리하여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으며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직종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계절적인 행정수요와 일시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채용된 인력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운용할 수 없다.

④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에 따른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 제2장 정수관리

제5조(정수 책정) ① 사용부서가 새로운 무기계약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가 사용부서로부터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책정 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채용목적·인원·기간·급여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무기계약근로자 정수를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예산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한다.

③ 예산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책정 승인서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한다.

제6조(정수)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직종별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리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책정 승인 시 사용부서 공무원의 정원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2. 무기계약근로자 정수로 책정된 분야가 정규직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 될 경우에는 그 정수를 줄인다.
3. 인력진단의 결과에 있어 과잉인력 발생시에는 그 정수를 줄인다.
4. 정수를 책정한 사무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그 정수를 줄인다.
5. 무기계약근로자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정수를 줄인다.
6.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인력이 퇴직시에는 충원하지 아니하고 그 정수를 줄인다.

제7조(대장 등 비치) 관리부서는 아래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사용부서는 제3호, 제4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부서별 무기계약근로자 정수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2. 인력관리대장 : 별지 제5호 서식
3. 근로자 명부 : 별지 제6호 서식
4. 임금대장 :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 제3장 채용 등

제8조(근로자 확정·통보) ① 관리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를 확정할 경우 그 명단을 예산부서·사용부서·급여 담당부서 및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 ① 사용부서는 관리부서에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통보한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의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요구에 따라서 관리부서에서 채용한다.

②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채용관계 서류를 제출받고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가족관계등록부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4.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5. 신원진술서(신원조사용) 2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한 사용부서는 그 내용을 즉시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을 작성·체결하여 고용한다.

제10조(채용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사용부서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제9조 제2항의 서류 사본 1부와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관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업무 취급 금지) 사용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종 변경) ① 관리부서는 업무의 신설·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근로자의 직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 및 근로자와 협의하여 직종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자격이나 면허를 필요로 하는 직종으로의 변경은 반드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종을 변경한 경우 예산부서·급여 담당 부서·사용부서 및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직종을 변경한 경우 이에 따른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전보) ① 관리부서는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근로자 보직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는 근로자를 전보한 경우 새로운 사용부서에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전입 받은 사용부서는 당해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를 전보한 경우 전출부서는 인사 관계서류 일체를 전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사용부서로 보내야 한다.

제15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관리부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적사항·채용·전보·징계·포상·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무기계약근

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사용부서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징계사유로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2. 본인이 퇴직을 원할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4.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때
  7.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
  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 ② 사용부서는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해고절차를 준용한다.
- ③ 사용부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지체없이 관리부서 및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장 복무

제17조(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복무)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 직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법」 및 「청원산림보호 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의 복무에 관한 규정 이외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8조(성실의무) 근로자는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엄수의무) 근로자 또는 근로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친절·공정의 의무) 근로자는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직장이탈금지) 근로자는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22조(청렴의 의무) ①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 받을 수 없다.

②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의 상사나 근로자(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품위유지의 의무) 근로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영리업무의 겸직제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 능률의 현저한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근로자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제25조(겸직허가) ① 근로자가 제24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근로자의 책임) 근로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신분증 등) ① 관리부서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시행규칙」에 의거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 등을 항상 휴대·폐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한 신분증은 관리부서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관리부서에서는 근로자의 재직·경력증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상황을 발급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중식시간을 포함한다)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단, 직종 및 근무환경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연장근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등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근무상황) ① 사용부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태도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32조(출장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 등이 정한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결근) ① 근로자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근로시간 전에 결근사유 및 결근일수를 증명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사용부서의 장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34조(지각, 조퇴, 외출) ① 근로자의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하거나 외출 하려는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제35조(공민권 그 밖의 권리행사)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적 직무를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

제36조(법정휴일)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단, 업무 특성에 따라 주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약정휴일) ① 약정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로 하고, 유급휴일로 한다.

② 제1항의 휴일로 인하여 업무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하여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 할 수 있다.

제38조(연차유급휴가) ① 연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근로자가 제2항의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④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연수 때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총 휴가일 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부서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

해 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39조(임산부의 보호) 산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수유시간 등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휴가의 허가) 이 규정이 정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1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제42조(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제43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신청 절차에 따라 육아 휴직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특별휴가) 근로자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제45조(업무외의 국외여행) 근로자는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업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46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의 급여는 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그 근로자의 출근이 다른 근로자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사용부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공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48조(휴직)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2개월 이상의 가료 또는 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 「전시근로동원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20일 이상의 징집 또는 소집명령을 받았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간병을 요할 때

② 사용부서는 근로자에 대한 휴직 또는 복직을 명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휴직기간 및 급여) 근로자의 휴직기간 및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제48조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는 1년 이내
2. 제48조 제2호, 제3호의 경우는 그 소요기간
3. 휴직자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육아휴직을 제외한 제48조에서 규정한 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0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 중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밀누설·음주운전 등 제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고 등 중징계 할 수 있다.

제51조(복직) 휴직자는 휴직사유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퇴직 처리한다.

## 제5장 신분보장

제52조(신분보장) 근로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3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만59세로 한다. 다만,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우에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년을 준용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정년에 달한 달이 1월 내지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 내지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54조(당연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직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정년에 달하였을 때
3. 채용결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제55조(퇴직원) ① 근로자는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0일전에 사용부서의 장에게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로부터 퇴직원을 접수한 경우 퇴직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퇴직금)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장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표창과 징계

제57조(표창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공로자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켰을 때
  4. 3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선행 또는 공로가 있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기여한 자
- ② 기타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5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징계 : 해고 · 정직
2. 경징계 : 감봉 · 견책 · 경고

제59조(징계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2.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한 경우
3. 기밀을 누설하여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경우
4. 사용부서장의 승인없이 결근, 지각, 조퇴 및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6. 폭언, 폭행, 업무방해,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7.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8.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한 경우
9. 그 밖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60조(징계의 효력) ① 경고는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의하게 한다.

②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동안 통상 임금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결한다.

⑥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간 포상을 금지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근속기간 가산을 금지한다.

1. 견책 : 6월
2. 감봉 : 12월
3. 정직 : 18개월

제61조(청원경찰의 징계) 청원경찰의 징계 및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군산시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62조(징계의결 기관) ① 징계의결은 군산시인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63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2.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카드 사본
3. 별지 제17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 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징계절차 및 관리) ① 징계절차 및 관리는 관리부서의 장이 행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인사위원과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징계당사자의 소명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자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참석 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4. 징계결정이 있는 경우 징계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당사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당해 인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재심사 개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2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③ 징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7장 임금

- 제65조(임금) ① 근로자의 매 회계년도별 임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형평성,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② 임금은 시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금은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구분하고 임금 산정기간은 당월 초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임금 종류나 지급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 제8장 교육 훈련

- 제66조(교육훈련 등) ①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교육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 ② 교육 참가자는 교육훈련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업무에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 ③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가 부담한다.

### 제9장 성희롱 예방

제67조(성희롱 예방 교육)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시 등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하거나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군산시 상근인력 관리규정(훈령 제278호)은 폐지한다.

제3조(기존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군산시 본청의 관과소, 의회사무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존의 무기계약근로자(상근인력, 청원산림보호직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전환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표(제6조 제1항 관련)

| 부 서 별     | 계   | 단 순 노 무 원 |              |                |                 |           |         | 도 로 보수원 | 환 경 미화원 | 청원 경찰 | 청원 산림보호직원 | 무 기 약 근로자 전환자 |
|-----------|-----|-----------|--------------|----------------|-----------------|-----------|---------|---------|---------|-------|-----------|---------------|
|           |     | 소계        | 시설물·장비유지관리인부 | 현장공사·작업 등 현업인부 |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 단순잡역 조무인부 | 행 정 보조원 |         |         |       |           |               |
| 계         | 273 | 126       | 25           | 5              | 6               | 7         | 83      | 40      | 41      | 56    | 4         | 6             |
| 본청 소계     | 160 | 61        | 11           | 4              | 6               | 4         | 36      | 26      | 41      | 23    | 4         | 5             |
| 공보담당관     | 2   | 2         | 1            |                |                 |           | 1       |         |         |       |           |               |
| 감사담당관     | 1   | 1         |              |                |                 |           | 1       |         |         |       |           |               |
| 새만금지원 담당관 | 1   | 1         |              |                |                 |           | 1       |         |         |       |           |               |
| 총 무 과     | 21  | 6         |              | 1              |                 | 3         | 2       |         |         | 15    |           |               |
| 기획예산과     | 1   | 1         |              |                |                 |           | 1       |         |         |       |           |               |
| 회 계 과     | 1   | 1         |              |                |                 |           | 1       |         |         |       |           |               |
| 세 무 과     | 3   | 3         |              |                |                 |           | 3       |         |         |       |           |               |
| 징 수 과     | 1   | 1         |              |                |                 |           | 1       |         |         |       |           |               |
| 민원봉사과     | 6   | 6         |              | 2              |                 |           | 4       |         |         |       |           |               |
| 지역경제과     | 3   | 2         |              |                |                 |           | 2       |         |         | 1     |           |               |
| 투자지원과     | 3   | 3         | 2            |                |                 |           | 1       |         |         |       |           |               |
| 해양수산과     | 1   | 1         |              |                |                 |           | 1       |         |         |       |           |               |
| 산림녹지과     | 5   | 1         |              |                |                 |           | 1       |         |         |       | 4         |               |
| 주민생활지원과   | 1   | 1         |              |                |                 | 1         |         |         |         |       |           |               |
| 복지지원과     | 2   | 2         |              | 1              |                 |           | 1       |         |         |       |           |               |
| 여성아동복지과   | 4   | 2         | 1            |                |                 |           | 1       |         |         |       |           | 2             |
| 문화체육과     | 6   | 4         | 2            |                |                 |           | 2       |         |         | 2     |           |               |
| 관광진흥과     | 9   | 4         | 4            |                |                 |           |         |         |         | 2     |           | 3             |
| 환경위생과     | 2   | 2         |              |                |                 |           | 2       |         |         |       |           |               |
| 자원순환과     | 45  | 1         |              |                |                 |           | 1       |         | 41      | 3     |           |               |
| 건설과       | 28  | 2         | 1            |                |                 |           | 1       | 26      |         |       |           |               |
| 건축과       | 1   | 1         |              |                |                 |           | 1       |         |         |       |           |               |
| 교통행정과     | 7   | 7         |              |                | 6               |           | 1       |         |         |       |           |               |
| 토지정보과     | 6   | 6         |              |                |                 |           | 6       |         |         |       |           |               |

| 부 서 별            | 계  | 단 순 노 무 원 |                      |                       |                       |              |            | 도 로<br>보수원 | 환 경<br>미화원 | 청원<br>경찰 | 청원<br>산림<br>보호<br>직원 | 무 기<br>약<br>전환자 |
|------------------|----|-----------|----------------------|-----------------------|-----------------------|--------------|------------|------------|------------|----------|----------------------|-----------------|
|                  |    | 소계        | 시설물·<br>장비유지<br>관리인부 | 현장공사·<br>작업 등<br>현업인부 | 현장지도<br>단속·감시<br>현장인부 | 단순잡역<br>조무인부 | 행 정<br>보조원 |            |            |          |                      |                 |
| 직속기관<br>소 계      | 26 | 22        |                      | 1                     |                       |              | 21         |            |            | 4        |                      |                 |
| 보 건 소            | 18 | 16        |                      |                       |                       |              | 16         |            |            | 2        |                      |                 |
| 농업기술<br>센 터      | 8  | 6         |                      | 1                     |                       |              | 5          |            |            | 2        |                      |                 |
| 사 업 소<br>소 계     | 79 | 35        | 14                   |                       |                       |              | 21         | 14         |            | 29       |                      | 1               |
| 수 도 과            | 23 | 6         | 1                    |                       |                       |              | 5          | 4          |            | 13       |                      |                 |
| 하 수 과            | 11 | 1         | 1                    |                       |                       |              |            | 10         |            |          |                      |                 |
| 체 육 시 설<br>관 리 과 | 15 | 11        | 10                   |                       |                       |              | 1          |            |            | 4        |                      |                 |
| 시립도서관<br>관 리 과   | 14 | 9         |                      |                       |                       |              | 9          |            |            | 4        |                      | 1               |
| 문 화 회 관<br>관 리 과 | 5  | 1         |                      |                       |                       |              | 1          |            |            | 4        |                      |                 |
| 철 새 생 태<br>관 리 과 | 6  | 2         | 2                    |                       |                       |              |            |            |            | 4        |                      |                 |
| 차 량 등 록<br>사 업 소 | 5  | 5         |                      |                       |                       |              | 5          |            |            |          |                      |                 |
| 의 회 사 무 국<br>소 계 | 8  | 8         |                      |                       |                       | 3            | 5          |            |            |          |                      |                 |
| 의 회 사 무 국        | 8  | 8         |                      |                       |                       | 3            | 5          |            |            |          |                      |                 |

【별표 2】

징 계 양 정 기 준 (제64조 관련)

| 비위도 및 과실                                  |                     | 비위의 도<br>가 중하고<br>고의가 있<br>는 경 우       | 비위의 도가<br>중하고 중과<br>실이거나 비<br>위의 도가<br>경하고 고의<br>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br>중하고 경과<br>실이거나 비<br>위의 도가<br>경하고 중과<br>실인 경우 | 비위의 도<br>가 경하고<br>경 과 실 인<br>경 우 |        |
|---|---------------------|--|--|--|----------------------------------|--------|
| 비위의 유형                                    |                     |  |  |  |                                  |        |
| 1. 성실의무 위반<br>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br>나. 기타 |                     | 해 고                                    | 해고-정 직   | 정 직-감봉   | 견책-경고                            |        |
| 2. 복종의무 위반                                |                     | 해 고                                    | 정 직  | 감 봉  | 견책-경고                            |        |
| 3. 직장이탈금지 위반                              |                     | 해 고                                    | 해고-정 직   | 정 직-감봉   | 견책-경고                            |        |
| 4. 친절공정의무 위반                              |                     | 해 고                                    | 정 직  | 감 봉  | 견책-경고                            |        |
| 5. 비밀엄수의무 위반                              |                     | 해 고                                    | 정 직  | 감 봉  | 견책-경고                            |        |
| 6. 청렴의무 위반                                |                     | 해 고                                    | 해고-정 직   | 정 직-감봉   | 견책-경고                            |        |
| 7. 품위유지의무 위반                              |                     | 해 고                                    | 해고-정 직   | 정 직-감봉   | 견책-경고                            |        |
|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                     | 해 고                                    | 정 직  | 감 봉  | 견책-경고                            |        |
| 9. 집단행위금지 위반                              |                     | 해 고                                    | 정 직  | 감 봉  | 견책-경고                            |        |
| 음주운전                                      | 1 회문책시              | 혈중알콜농도 0.10%미만인 경우<br>(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 경고-견책  |  |                                  |        |
|   |                     | 혈중알콜농도 0.10%이상인 경우<br>(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 견책-감봉  |  |                                  |        |
|   |                     |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br>인한 인적·물적 피해         | 견책-감봉  |  |                                  |        |
|   |                     | 음주뺑소니로 인한 인적·물적<br>피해 발생               | 감봉-정직  |  |                                  |        |
|   |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br>취소 상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 감봉-정직  |  |                                  |        |
|   | 2 회문책시              | 혈중알콜농도 0.10%미만인 경우<br>(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 감봉-견책  |  |                                  |        |
|   |                     | 혈중알콜농도 0.10%이상인 경우<br>(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 감봉-정직  |  |                                  |        |
|   | 3 회문책시              | 혈중알콜농도 0.10%미만인 경우<br>(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 정직-해고  |  |                                  |        |
| 혈중알콜농도 0.10%이상인 경우<br>(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                     | 정직-해고                                  |  |  |                                  |        |
| 교통사고                                      | 검찰·<br>경찰받은<br>교통사고 | 구 분                                    | 기 소  | 구약식  | 기소유예                             | 공소권 없음 |
|   |                     | 중대한 교통사고(사망 고의 도주)                     | 정 직-해고   | 경 고  | 주 의                              | 불 문    |
|   |                     | 10대 항목위반 교통사고<br>(3주 이상 상해)            | 경고-견책  | 경 고  | 주 의                              | 불 문    |
|   |                     | 일반 교통사고<br>(3주 이상 상해)                  | 경 고  | 주 의  | 주 의                              | 불 문    |
|   |                     | 기타 교통사고(접촉사고)                          | 주 의  | 불 문  | 불 문                              | 불 문    |

【별지 제1호 서식】

무기계약근로자정수책정요구서 (제5조 제1항 관련)

|                         |                   |                |                   |              |     |
|-------------------------|-------------------|----------------|-------------------|--------------|-----|
| 직 종 별                   |                   |                |                   |              |     |
| 채 용 목 적<br>(구체적 기재)     |                   |                |                   |              |     |
| 요 구 인 원                 |                   |                |                   |              |     |
| 관련업무담당<br>일반직 및<br>기능직수 | 일반직<br>직급별<br>정 원 |                | 기능직<br>직급별<br>정 원 |              |     |
| 업 무 량                   | 업무명               | 업무처리량<br>(일/월) | 건(회)당<br>평균시간     | 총시간<br>(일/월) | 비 고 |
|                         |                   |                |                   |              |     |
|                         |                   |                |                   |              |     |
| 채 용 기 간                 |                   |                |                   |              |     |
| 소 요 예 산                 | 구 분               | 예산과목           | 소 요 액<br>(천 원)    | 산출기초         |     |
|                         | 급 여               |                |                   |              |     |
|                         | 운영비               |                |                   |              |     |
| 재 원                     |                   |                |                   |              |     |
| 향 후 대 책                 |                   |                |                   |              |     |

군산시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무기계약  
근로자 정수를 책정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관·부서장 (인)

군산시장 귀하

※ 직종별 :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분

【별지 제2호 서식】

무기계약근로자정수책정승인서(제5조 제2항 관련)

|       |         |      |                |         |
|-------|---------|------|----------------|---------|
| 직 종 별 |         |      |                |         |
| 채용목적  |         |      |                |         |
| 인원    | 요 구 인 원 |      |                |         |
|       | 승 인 인 원 |      |                |         |
| 채용일자  |         | 채용기간 |                |         |
| 소요예산  | 구 분     | 예산과목 | 소 요 액<br>(천 원) | 산 출 기 초 |
|       | 급 여     |      |                |         |
|       | 운영비     |      |                |         |
| 승인조건  |         |      |                |         |
| 기타사항  |         |      |                |         |

군산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책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불승인 통보서(제5조 제2항 관련)

\_\_\_\_\_에서 제출한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책정 요구 건은 다음 사유로 불승인 되었기에 군산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통보합니다.

- 다 음 -

| 요구일자 | 건 명 | 내 용 | 사 유 |
|------|-----|-----|-----|
|      |     |     |     |

년 월 일

관 리 부 서 장 ①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명부(제7조 관련)**

|                         |          |                   |               |
|-------------------------|----------|-------------------|---------------|
| ①성명                     |          | ②생년월일             |               |
| ③주소 (전화 : )             |          |                   |               |
| ④부양가족 명                 |          | ⑤종사업무             |               |
| 이력                      | ⑥기능 및 자격 | 퇴직                | ⑩해고일<br>년 월 일 |
|                         | ⑦최종 학력   |                   | ⑪퇴직일<br>년 월 일 |
|                         | ⑧경력      |                   | ⑫사유           |
|                         | ⑨병역      |                   | ⑬금품청산 등       |
| ⑭고용일(계약기간)<br>년 월 일 ( ) |          | ⑮근로계약갱신일<br>년 월 일 |               |
| <16><br>근로 계약 조건        |          |                   |               |
| <17>특기사항(교육, 건강, 휴직 등)  |          |                   |               |





【별지 제9호 서식】

**근로계약서(제11조 제1항 관련)**

군산시장(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내용 :
  -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의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
  -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
-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 근로일은 부서의 특성에 맞게 주 40시간에 맞춰 조정가능
  - 휴 일 :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및 보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 임 금
  - 일급(일당) : 원 × 근로일 (기타 법정수당은 사유발생 시 지급)
  - 가산임금률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 각각 150%
  - 임금지급일 : 매월 20일 (휴일인 경우 전일)
  - 보수는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 7.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군산시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           |           |
|-----------|-----------|
| (갑) 주 소 : | (전화 : )   |
| 기관명 :     |           |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 (을) 주 소 : | (전화 : )   |
| 주민등록번호 :  |           |
|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0호 서식】

|                     |            |                |    |      |     |      |             |     |      |     |    |  |
|---------------------|------------|----------------|----|------|-----|------|-------------|-----|------|-----|----|--|
| 성명                  | 한글         |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기록카드 |    |      |     |      |             |     |      | 직종별 |    |  |
|                     | 한자         |                |    |      |     |      |             |     |      | 소속  |    |  |
| 성별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
| 사진                  | 가족사항       |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학력  | 직업   |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학력  | 직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 력                 |            |                |    |      | 경 력 |      |             |     |      |     |    |  |
| 기간                  | 학교명 및 전공과목 |                |    |      | 학위  | 기간   | 근무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br>취득일자<br>종목등급 |            |                |    |      |     | 병역사항 |             |     | 신체사항 |     |    |  |
|                     |            |                |    |      |     | 신원조사 | 신원조사<br>일   |     |      | 신장  |    |  |
|                     |            |                |    |      |     |      | 신원조사<br>회보일 |     |      | 체중  |    |  |
|                     |            |                |    |      |     |      |             |     | 시력   |     | 좌  |  |
|                     |            |                |    |      |     |      |             |     |      | 우   |    |  |
| 최초사역일               |            |                |    |      | 특기  |      |             | 혈액형 |      |     |    |  |

□ 최초 사역부서 순으로 작성

| 연 번 | 기 간 |    | 근 무 부 서 | 직 종 | 담 당 사 무 | 확 인 자 (과장) |
|-----|-----|----|---------|-----|---------|------------|
|     | 부터  | 까지 |         |     |         |            |
|     | 부터  | 까지 |         |     |         |            |
|     | 부터  | 까지 |         |     |         |            |
|     | 부터  | 까지 |         |     |         |            |
|     | 부터  | 까지 |         |     |         |            |
|     | 부터  | 까지 |         |     |         |            |
|     | 부터  | 까지 |         |     |         |            |

| 포 상 | 년월일 | 종 류 | 시행청 | 정 계 | 년월일 | 종 류 | 발령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     |     |     |     |     |

이 표는 사실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

【별지 제11호 서식】

### 신 분 증 (제27조 제1항 관련)

(전 면)



(후 면)



【별지 제12호 서식】

## 재직·경력증명서

|               |       |     |             |  |
|---------------|-------|-----|-------------|--|
| 인 적 사 항       | ①성 명  | 한 글 | ②주민등록<br>번호 |  |
|               |       | 한 자 |             |  |
|               | ③주 소  |     |             |  |
| 재 직 · 경 력 사 항 | ④소 속  |     |             |  |
|               | ⑤직 명  |     |             |  |
|               | ⑥재직기간 |     |             |  |
| ⑦용 도          |       |     |             |  |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직인)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시간외근로기록부 (제31조 제2항 관련)**

연 번 :

부서명 : ( 년 월 일)

|        |     |
|--------|-----|
| 결<br>재 | 부서장 |
|        |     |

| 직 종 | 성 명 | 시 간 외 근 무 사 항 |      |                    |             | 비 고 |
|-----|-----|---------------|------|--------------------|-------------|-----|
|     |     | 구 분           | 근무시간 | 하여야 할 일<br>(구체적으로) | 처리시한<br>월 일 |     |
|     |     |               | : 부터 |                    |             |     |
|     |     |               | : 까지 |                    |             |     |
|     |     |               | : 부터 |                    |             |     |
|     |     |               | : 까지 |                    |             |     |
|     |     |               | : 부터 |                    |             |     |
|     |     |               | : 까지 |                    |             |     |
|     |     |               | : 부터 |                    |             |     |
|     |     |               | : 까지 |                    |             |     |
|     |     |               | : 부터 |                    |             |     |
|     |     |               | : 까지 |                    |             |     |
|     |     |               | : 부터 |                    |             |     |
|     |     |               | : 까지 |                    |             |     |
|     |     |               | : 부터 |                    |             |     |
|     |     |               | : 까지 |                    |             |     |

【별지 제15호 서식】

##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 신청서

|               |    |  |    |  |      |  |
|---------------|----|--|----|--|------|--|
| 신청자<br>인적사항   | 성명 |  | 소속 |  | 생년월일 |  |
| 영유아 성명        |    |  |    |  |      |  |
| 생년월일          |    |  |    |  |      |  |
| 육아휴직<br>개시일   |    |  |    |  |      |  |
| 육아휴직<br>종료예정일 |    |  |    |  |      |  |
| 기 타           |    |  |    |  |      |  |

군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귀 하

## 【별지 제16호 서식】

###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제63조 제2항 관련)

|                      |      |    |  |             |  |           |  |
|----------------------|------|----|--|-------------|--|-----------|--|
| 인 적 사 항              | ①성명  | 한글 |  | ②소속         |  | ③직종       |  |
|                      |      | 한자 |  | ④주민<br>등록번호 |  | ⑤채직<br>기간 |  |
|                      | ⑥주 소 |    |  |             |  |           |  |
| ⑦징계사유                |      |    |  |             |  |           |  |
| ⑧징계의결<br>요구권자의<br>의견 |      |    |  |             |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확 인 서 (제63조 제2항 관련)**

|                                     |  |        |       |          |     |       |
|-------------------------------------|--|--------|-------|----------|-----|-------|
|                                     | ①소 속   | ②직 종   |       | ③성 명     |     |       |
| 1. 인적사항                             | (현재)   | (현재)   |       | (한글)     |     |       |
|                                     | (협의당시)   | (협의당시) |       | (한자)     |     |       |
| 2. 비위유형                             | 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        |       |          |     |       |
|                                     | ②공급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        |       |          |     |       |
|                                     | 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        |       |          |     |       |
| 3. 감경대상<br>공적유무 및<br>감경대상<br>비위해당여부 | ①공 적 사 항                                       |        |       | ②징 계 사 항 |     |       |
|                                     | 포상일자   | 포상종류   | 시 행 청 | 일 자      | 종 류 | 발 령 청 |
|                                     |  |        |       |          |     |       |
|                                     | ③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        |       |          |     |       |
| 4. 혐의자의<br>평소소행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5. 기 타                              | *기타 정상 참작사유 기재                                 |        |       |          |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 급) (성 명) (인 )  
 징계의결요구권자(직 위) (인 )

【별지 제18호 서식】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제64조 제1항 관련)**

|      |                 |      |
|------|-----------------|------|
| ①소 속 | ②직 종            | ③성 명 |
|      |                 |      |
| ④주 문 |                 |      |
| ⑤이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인

귀하

참고: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군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64조 제1항 제4호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7일내에 해당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2-1488호

##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전면 개정조례 입법예고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례 전면 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일

군 산 시 장

### 1. 개정이유

국민체육센터 정식인정대회가 가능한 시설을 갖춘 운동장 등이 조성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육시설 전용이용료**와 **운동장 조명이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수영장 이용료 규정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체육시설을 제공 하는데 목적이 있음

### 2. 개정법규명

◎ 군산시 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 조례

###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전용이용료 신설 (안 " 별표2 ")

○ 축구장1면, 테니스장2면, 족구장1면,

나. 테니스장 개인 이용료 신설 (안 " 별표3 ")

다. 운동장 전기조명 이용료 신설 (안 " 별표2 ")

##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체육시설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73-912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석화로 63-15 국민체육센터 계  
(전화:451-1094, FAX:451-1094)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과 국민체육센터 담당(451-1094)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군산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및 이용료 징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체육센터시설"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른 필요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 2."체육센터의 이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3."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 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4."어린이"라 함은 6세이상 12세이하인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 5."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생을 말한다.
- 6."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의 군경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 7."성인"이라 함은 20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
- 8."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인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 9."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10."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 제2장 국민체육센터 설치·운영

제3조(운영시설) 체육센터를(이하 "체육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2. 후생복지시설 : 홀/휴게실, 다목적 강의실, 직원식당
3. 부대시설 : 탈의실 샤워실 사무실 화장실 매표실 창고, 주차장, 본부석, 락카룸 등

제4조(이용허가) ①체육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표1】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이용권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③운동경기나 또는 그 외에 행사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자는 별표2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변경 할때도 같다.

④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때는 별표3의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으므로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이용허가 우선순위)

①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가 2인이상 경합시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대회·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②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 순서를 변경 할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국민체육센터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센터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 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때

**제8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자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체육센터시설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기타 이용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명백한 자
6. 수영객이 유아동반 입장시 익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자

**제9조(이용의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 하였을때
  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육센터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때
  4.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함이 판명될때
- ②제1항 제1호내지 제6호에 해당되어 이용의 취소나 정지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이용시간)** 체육센터의 이용시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 수 영 장 : 06:00~20:00 (평 일)

○ 수 영 장 : 06:00~18:00 (토요일)

○ 수 영 장 : 09:00~18:00 (일요일)

○ 게이트볼장 : 09:00~18:00

○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 06:00~22:00 로 한다.

**제11조(이용료)** ①체육센터시설의 이용료는"별표1" "별표2" "별표3"으로 한다.

- ②시장은 체육센터의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는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수 있다.
- ③시장은 체육센터의 이용인원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의 3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조정 할수 있다
- ④전용이용자가 이용기간중 발생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전용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⑤별표2에 의거 주간이용자가 야간이용 1시간 이상 초과시에는 야간 이용자로 간주한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보훈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4.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5% 감면
5.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6. 국가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체육행사 또는 일반행사
7. 불우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어린이 · 경로대상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군경행사
8.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전북도 및 군산시 대표선수(팀)로 선발된자는 해당 기본료의 50%를 감면함
9. 장애우들이 운동장 체육시설 전용사용시 50%감면

제13조(이용료 감면절차) 체육센터의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제12조 해당 각호의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제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3. 신청인이 체육센터 이용 5일전에 이용권 또는 회원권의 환불을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전액 반환

4. 체육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5.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구입한자가 이용일 2일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연기 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6. 이용권 및 회원권은 이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15조(휴관)** ①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호과 같다.

1.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
2.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3. 운동장 시설은 연중 운영하되, 추석 · 설연휴 기간은 휴무할 수 있다.  
또한 폭우, 폭설, 제설작업, 기타 사항시 휴무 할 수 있다.
4. 운동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휴무를 지정 할수 있다.

②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등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원권)** 수영장 및 헬스장의 1월이상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의 회원권을 발행 할 수 있다.

**제1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의 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료 징수)**

①이용자가 이 조례에 의한 이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운동장 전용 이용료는 별표2호 별표3호를 별지5서식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0조(시설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2년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그 시설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다.

③수탁자가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 10일 전 까지 준수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기타시설의 위탁관리 규정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위탁관리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2. 수탁자가 수탁협약을 위반한 때
3. 운영상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때
4. 기타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이 조례를 위반할때

**제22조(수탁자의 부대시설)** ①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수탁자가 부담으로 한다.

②수탁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기부채납하거나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수탁을 받은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수 없다.

**제24조(손해배상)** ①시설의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수탁자가 시설운영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한다.

○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

(단위 : 원)

| 구 분   |        | 이 용 료<br>(부가세별도) | 비 고                                |
|-------|--------|------------------|------------------------------------|
| 1회 입장 | 성 인    | 2,000            | <u>이용시간은 1일 1회<br/>2시간 이내로 한다.</u> |
|       | 청소년·군인 | 1,500            |                                    |
|       | 어린이·경노 | 1,000            |                                    |
| 회 원   | 성 인    | 40,000           |                                    |
|       | 청소년·군인 | 30,000           |                                    |
|       | 어린이·경노 | 20,000           |                                    |

- 회원이라함은 1개월이상 입장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3개월 이상 회원에게는 월회비의 20%, 6개월은 25%, 12개월은 30%의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 20명이상 단체이용시는 20%,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1~3급은 보호자 1인포함)에게는 50%를 할인할 수 있다.
- 13세 이상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5%를 감면할 수 있다.
- 단, 중복할인은 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 제4호는 예외로 한다.
- 이용료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구분하지 않는다.
- 회원이용시간은 1일 1회 한하여 2시간 이내로 한다.**

별표 2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전용 이용료 및 전기조명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단위 : 원)

| 구 분              | 이용 목적              | 휴 일<br>(토요일포함) | 평 일    | 초 과 요 금   |
|------------------|--------------------|----------------|--------|---|
| 축 구 장            | 체 육 경 기            | 60,000         | 40,000 | 축구경기는 1게임(2시간) 원칙<br>(초과게임당 2할 가산)<br>· 4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 1/2가산 |
|                  | 체 육 이 외            | 84,000         | 60,000 |   |
| 테 니 스 장<br>(1면당) | 체 육 경 기            | 12,000         | 8,000  | 8시간 표준 초과시<br>표준액의 1/2 가산                                     |
|                  | 체 육 이 외            | 14,000         | 10,000 |   |
| 족 구 장            | 체 육 경 기<br>체 육 이 외 | 6,000          | 4,000  | 2시간 기준  |
| 게이트볼장            | 무                  | 료              | 개      | 방   |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 등록 장애인은 50%를 할인 징수함
- 주간이용자가 야간이용시간 1시간이상 초과시에는 야간이용자로 간주함
- 환경기장에 전광판 조명타워를 2개를 동시에 이용할때는 전기요금은 1개 시설만 적용함
- 운동장 전기조명 이용료 (전기기본 이용료×일수/30)+전력량요금
- 어린이 이용료는 기본료의 70% 징수함
- 단체는 동일종목 1개팀 (동일소속) 20인 이상으로 해당기본료의 80%를 징수함

별표3 체육시설 이용료 중 테니스장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구 분           | 기 간  | 개 인<br>(1인당 이용료) | 비 고 |
|---------------|------|------------------|-----|
| 테니스장<br>(1면당) | 2시간당 | 1,600            |     |

- 1면당 사용인원을 30인이하로 하며 토요일,공휴일 및 각종 경기 등 행사시 사용을 제한 할수 있다.
-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기본료의 50%를 가산 징수함
- 등록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하여 기본료의 50%를 징수함

## 별지1 이용권

|   |  |  |  |
|---|--|--|--|
| NO.<br>년 월 일<br><br>1일(1회) 입장권<br><br><b>일반성인</b><br><br><b>2,200원</b><br><br>-1회 입장 2시간이내-<br>군산국민체육센터<br>년 월 일 영수증 00000<br>2,200원<br>현금영수증 승인번호 : 000000000<br>군산국민체육센터<br>사업자 NO 401-83-03692 | NO.<br>년 월 일<br><br>1일(1회) 입장권<br><br><b>어린이경로</b><br><br><b>1,100원</b><br><br>-1회 입장 2시간이내-<br>군산국민체육센터<br>년 월 일 영수증 00000<br>1,100원<br>현금영수증 승인번호 : 000000000<br>군산국민체육센터<br>사업자 NO 401-83-03692 | NO.<br>년 월 일<br><br>1일(1회) 입장권<br><br><b>청소년군경일반</b><br><br><b>1,650원</b><br><br>-1회 입장 2시간이내-<br>군산국민체육센터<br>년 월 일 영수증 00000<br>1,650원<br>현금영수증 승인번호 : 000000000<br>군산국민체육센터<br>사업자 NO 401-83-03692 | NO.<br>년 월 일<br><br>1일(1회) 입장권<br><br><b>장애어린이경로</b><br><br><b>550원</b><br><br>-1회 입장 2시간이내-<br>군산국민체육센터<br>년 월 일 영수증 00000<br>550원<br>현금영수증 승인번호 : 000000000<br>군산국민체육센터<br>사업자 NO 401-83-03692 |
|---|--|--|--|

※ 일반성인, 어린이, 경로, 청소년, 군경, 장애어린이, 경로

별지2 회원권 (앞면)

# 회 원 권

NO :

프로그램 :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및 헬스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 용 기 간 :



군 산 시 장

별지2 회원권 (후면)

# 회 원 준 수 사 항

1. 구입하신 회원권은 조례 제14조 (이용료 반환) 규정에 의한다.
2. 본 회원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수 없음
3. 회원은 체육센터의 수칙을 준수 하여야 함
4. 입장시 회원권을 열쇠 보관함에 보관후  
퇴장시 열쇠반납 후 회원권 인수

별지3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이용허가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이용허가 신청서

|         |
|---------|
| 처 리 기 간 |
|         |

|         |       |   |                             |
|---------|-------|---|-----------------------------|
| 종 목     |       |   |                             |
| 이 용 목 적 |       |   |                             |
| 이 용 일 시 | 년     | 월 | 일 시부터<br>( 일간)<br>년 월 일 시까지 |
| 단       | 일 반   | 원 |                             |
| 체       | 군경·학생 | 원 |                             |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단 체 명 :

대표자성명 :

전 화 :

군산시장 귀하

별지4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이용허가서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이용허가서

1. 신청인주소 :

단체명 :

대표자성명 : (전화 : )

2. 이용허가

| 시설명 | 목적 | 이용기간 | 이용시간 | 비고 |
|-----|----|------|------|----|
|     |    |      |      |    |

3. 이용료

| 구분  | 금액 (기본액) | 산출기초 | 비고 |
|-----|----------|------|----|
| 이용료 |          |      |    |

4. 조건

위와 같이 허가함.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 인 )



별지6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이용료 감면 신청서는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이 용 료 감 면 신 청 서

-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직 업 :  
     전 화 :
- 2.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명 :
- 3. 이 용 목 적 :
- 4. 이 용 기 간 :
- 5. 감 면 의 종 류 : 면제, 감액
- 6. 감 면 의 사 유 :

위와 같이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이용료의 감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산 시 장 귀 하

별지7 국민체육센터 수영장·헬스장 회원대장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회 원 대 장

입력시간 : 년 월 일

| 코드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등록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접수일자 | 만료일자 | 회원구분 | 요금 | 회원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타 시 조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비교표

### ◇ 축구장

(단위:원)

| 구 분<br>명 칭      | 사 용 목 적 | 전 용 사 용 료 |            | 시간기준 | 비고         |
|-----------------|---------|-----------|------------|------|------------|
|                 |         | 평 일       | 휴일(토요일 포함) |      |            |
| 군산시<br>국민체육센터   | 체육경기    | 40,000    | 60,000     | 2    | 전기요금<br>별도 |
|                 | 체육경기 외  | 60,000    | 84,000     |      |            |
| 군산시 월명<br>종합경기장 | 체육경기    | 50,000    | 75,000     | 2    |            |
|                 | 체육경기 외  | 70,000    | 105,000    |      |            |
| 전 주 시<br>축 구 장  | 체육경기    | 30,000    | 45,000     | 2    |            |
|                 | 체육경기 외  | -         | -          |      |            |
| 익 산 시<br>축 구 장  | 체육경기    | 50,000    | 70,000     | 8    |            |
|                 | 체육경기 외  | 100,000   | 150,000    |      |            |
| 김 제 시<br>축 구 장  | 체육경기    | 50,000    | 70,000     | 8    |            |
|                 | 체육경기 외  | 100,000   | 140,000    |      |            |
| 남 원 시<br>축 구 장  | 체육경기    | 30,000    | 40,000     | 3    |            |
|                 | 체육경기 외  | -         | -          |      |            |
| 정 읍 시<br>축 구 장  | 체육경기    | 15,000    | 20,000     | 2    |            |
|                 | 체육경기 외  | 20,000    | 30,000     |      |            |

### ◇ 테니스장

(단위:원)

| 구 분<br>명 칭      | 사 용 목 적 | 전 용 사 용 료 |            | 시간기준 | 비고         |
|-----------------|---------|-----------|------------|------|------------|
|                 |         | 평 일       | 휴일(토요일 포함) |      |            |
| 군산시<br>국민체육센터   | 체육경기    | 8,000     | 12,000     | 8    | 전기요금<br>별도 |
|                 | 체육경기 외  | 10,000    | 14,000     |      |            |
| 군산시 월명<br>종합경기장 | 체육경기    | 10,000    | 15,000     | 8    |            |
|                 | 체육경기 외  | 12,000    | 17,000     |      |            |
| 전 주 시<br>축 구 장  | 체육경기    | 10,000    | 15,000     | 1면당  |            |
|                 | 체육경기 외  | -         | -          |      |            |
| 익 산 시<br>축 구 장  | 체육경기    | 10,000    | 15,000     | 8    |            |
|                 | 체육경기 외  | -         | -          |      |            |
| 김 제 시<br>축 구 장  | 체육경기    | 8,000     | 10,000     | -    |            |
|                 | 체육경기 외  | -         | -          |      |            |
| 남 원 시<br>축 구 장  | 체육경기    | -         | -          | -    |            |
|                 | 체육경기 외  | -         | -          |      |            |
| 정 읍 시<br>축 구 장  | 체육경기    | 2,000     | 3,000      | 2    |            |
|                 | 체육경기 외  | -         | -          |      |            |

## ◇ 족구장

(단위:원)

| 구 분<br>명 칭      | 사용구분 | 전 용 사 용 료     |                | 시간기준 | 비 고      |
|-----------------|------|---------------|----------------|------|----------|
|                 |      | 평 일           | 휴일(토요일포함)      |      |          |
| 군산시<br>국민체육센터   | 체육경기 | 4,000         | 6,000          | 2    | 전기요금 별도  |
| 군산시 월명<br>종합경기장 | "    | 5,000<br>(예정) | 10,000<br>(예정) | 2    | ※ 조례 추진중 |
| 전 주 시<br>족 구 장  | "    | 5,000         | 10,000         | 2    |          |
| 익 산 시<br>족 구 장  | "    | -             | -              | -    |          |
| 김 제 시<br>족 구 장  | "    | 5,000         | 6,000          | 2    |          |
| 남 원 시<br>족 구 장  | "    | -             | -              |      |          |
| 정 읍 시<br>족 구 장  | "    | -             | -              |      |          |

군산시 공고 제2012-1489호

## 공 고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사업소, 읍·면·동의 공휴일 전일 당직근무자가 공휴일 별도 출근없이 공휴일 근무 전일 정상근무시간에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당직 보고 하고, 공휴일이 2일 초과 될 경우 상황에 따라 1~2일 단위로 당직근무자를 편성하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당직 보고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8조제2항 중 『공휴일에는 “당일 09:00까지”를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단, 휴일(토,일,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로 한다』 로 개정

###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총무과(☎ 063-450-6120, FAX:450-4598)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총무계(☎ 063-450-612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제 호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 개정안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휴일에는 “당일 09:00까지”를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단, 휴일(토,일,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조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생략)</p> <p>②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당일 09:00까지 새울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보고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 <p>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br/>-----,----- <u>전날 정상근무시간 18:00까지 새울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단, 휴일(토,일,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u></p> <p>③·④ (현행과 같음)</p> |

군산시 고시 제2012-83호

## 도시계획시설(소로 3-714호 외1개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714호 외1개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7월 13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262-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714호 외1개노선)사업
  - 나. 명 칭 : 고봉리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구분 | 노 선 명   | 결정조서  |       | 실시계획인가 |       |                     | 비 고 |
|----|---------|-------|-------|--------|-------|---------------------|-----|
|    |         | 폭원(m) | 연장(m) | 폭원(m)  | 연장(m) | 면적(m <sup>2</sup> ) |     |
| 도  | 소로3-714 | 6.0   | 59    | 6.0    | 59    | 397                 |     |
| 로  | 소로3-715 | 6.0   | 69    | 6.0    | 69    | 517                 |     |
| 계  |         |       | 128   |        | 128   | 914                 |     |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7 ~ 201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계획실용 생략
8. 관계도서 : 계획실용 생략

군산시 공고 제2012-1444호

## 2012년 상반기 정책실명제 등록 공고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2012년 상반기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정책실명제 등록 목록

| 등록<br>번호 | 정 책 명                           | 소관부서     | 담당자           | 비고       |
|----------|---------------------------------|----------|---------------|----------|
| 1        | 기록관리 시스템 설치                     | 총 무 과    | 전산7급<br>유미선   | 시설<br>공사 |
| 2        |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 총 무 과    | 전산7급<br>유미선   | 시설<br>공사 |
| 3        | 군산시립도서관 건립                      | 시립도서관관리과 | 사서6급<br>양병학   | 시설<br>공사 |
| 4        | 시립도서관 운영기반 조성사업(정보화)            | 시립도서관관리과 | 사서7급<br>이현주   | 시설<br>공사 |
| 5        | 시립도서관 운영기반 조성사업(CI개발 및 사인시스템)   | 시립도서관관리과 | 사서7급<br>이현주   | 시설<br>공사 |
| 6        | 시립도서관 운영기반 조성사업(RFID 시스템)       | 시립도서관관리과 | 사서8급<br>이진숙   | 시설<br>공사 |
| 7        | 시립도서관 운영기반 조성사업(커튼류 설치사업)       | 시립도서관관리과 | 사서7급<br>이현주   | 시설<br>공사 |
| 8        | 시립도서관 운영기반 조성사업(개관도서 구입)        | 시립도서관관리과 | 사서8급<br>김혜정   | 시설<br>공사 |
| 9        | 시립도서관 운영기반 조성사업(집기 구입)          | 시립도서관관리과 | 사서8급<br>이진숙   | 시설<br>공사 |
| 10       | 군산공설시장재건축                       | 지역경제과    | 행정7급<br>백일성   | 시설<br>공사 |
| 11       | 산업기반기술혁신시스템구축                   | 지역경제과    | 행정7급<br>손수경   | 시설<br>공사 |
| 12       |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지역경제과    | 행정8급<br>이숙미   | 자치<br>법규 |
| 13       |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 지역경제과    | 행정7급<br>이영수   | 자치<br>법규 |
| 14       | 군산시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지역경제과    | 행정7급<br>이영수   | 자치<br>법규 |
| 15       | 기능인력 교육훈련센터 건립                  | 투자지원과    | 행정8급<br>정숙현   | 시설<br>공사 |
| 16       |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br>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투자지원과    | 세무8급<br>김용일   | 자치<br>법규 |
| 17       | 선유도 호안침식 방지공사                   | 항만물류과    | 시설8급<br>서현기   | 시설<br>공사 |
| 18       |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                   | 농 정 과    | 농업9급<br>황문호   | 시설<br>공사 |
| 19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 농 정 과    | 공업7급<br>김원기   | 시설<br>공사 |
| 20       |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 농 정 과    | 농업8급<br>박상규   | 자치<br>법규 |
| 21       |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7급<br>노광석 | 시설<br>공사 |
| 22       | 비응항 어업용 면세유 급유시설                |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7급<br>박동래 | 시설<br>공사 |
| 23       | 비응항 부잔교 시설사업                    |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7급<br>백동현 | 시설<br>공사 |

|    |                        |       |             |          |
|----|------------------------|-------|-------------|----------|
| 24 |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 해양수산과 | 시설8급<br>김재강 | 시설<br>공사 |
| 25 |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사업          | 해양수산과 | 시설7급<br>이경배 | 시설<br>공사 |
| 26 | 선유도 지방어항 개발사업          | 해양수산과 | 시설7급<br>이경배 | 시설<br>공사 |
| 27 |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복지지원과 | 행정7급<br>김재숙 | 시설<br>공사 |
| 28 | 군산예술회관 신축공사            | 문화체육과 | 시설8급<br>김용일 | 시설<br>공사 |
| 29 |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사업           | 문화체육과 | 계약직<br>온혜영  | 시설<br>공사 |
| 30 | 은파자전거도로(산책로)개설         | 관광진흥과 | 시설7급<br>이존화 | 시설<br>공사 |
| 31 | 은파관광지 생태습지조성공사         | 관광진흥과 | 시설8급<br>김대환 | 시설<br>공사 |
| 32 | 진포해양테마공원 조성            | 관광진흥과 | 시설7급<br>이존화 | 시설<br>공사 |
| 33 |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 관광진흥과 | 시설8급<br>김민석 | 시설<br>공사 |
| 34 | 새만금 관광편의시설 구축          | 관광진흥과 | 시설8급<br>김민석 | 시설<br>공사 |
| 35 | 군산시축제발전및운영에 관한조례       | 관광진흥과 | 행정7급<br>김선영 | 자치<br>법규 |
| 36 | 군산시아생동물에의한 농작물피해보상시행규칙 | 환경위생과 | 보건7급<br>조경아 | 자치<br>법규 |
| 37 | 군산비행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 연구용역 | 환경위생과 | 공업7급<br>이도영 | 연구<br>용역 |
| 38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 자원순환과 | 공업8급<br>안현철 | 시설<br>공사 |
| 39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자원순환과 | 행정9급<br>정기명 | 자치<br>법규 |
| 40 | 근대역사 경관 조성사업           | 도시계획과 | 시설8급<br>김대영 | 시설<br>공사 |
| 41 | 연안도로~구암선 도로개설          | 도시계획과 | 시설7급<br>이기철 | 시설<br>공사 |
| 42 | 미장초교 진입로 개설            | 도시계획과 | 시설7급<br>이유청 | 시설<br>공사 |
| 43 | 미룡동 원당마을 진입로 개설        | 도시계획과 | 시설8급<br>장재석 | 시설<br>공사 |
| 44 | 미장동 경포천옆 도로개설          | 도시계획과 | 시설8급<br>장재석 | 시설<br>공사 |
| 45 | 서해공업사~소룡중기 도로개설        | 도시계획과 | 시설7급<br>이유청 | 시설<br>공사 |
| 46 | 현대코아뒤 도로개설             | 도시계획과 | 시설8급<br>장재석 | 시설<br>공사 |
| 47 | 동흥남동 공원부근 도로개설         | 도시계획과 | 시설7급<br>이유청 | 시설<br>공사 |
| 48 | 신풍동 월명@~군산중 도로개설       | 도시계획과 | 시설8급<br>장재석 | 시설<br>공사 |
| 49 | 미룡동 오복마트주변 도로개설        | 도시계획과 | 시설8급<br>장재석 | 시설<br>공사 |
| 50 | 옥구소도읍 주변 도로개설          | 도시계획과 | 시설7급<br>이기철 | 시설<br>공사 |

|    |                                      |       |             |          |
|----|--------------------------------------|-------|-------------|----------|
| 51 | 삼학동 조양슈퍼옆 도로개설                       | 도시계획과 | 시설8급<br>장재석 | 시설<br>공사 |
| 52 | 지방도 709호선 도로확장공사                     | 도시계획과 | 시설7급<br>이기철 | 시설<br>공사 |
| 53 | 오리알 약수터 진입로 개설공사                     | 도시계획과 | 시설8급<br>문 권 | 시설<br>공사 |
| 54 | 서수아이~용성간 도로개설                        | 도시계획과 | 시설8급<br>장재석 | 시설<br>공사 |
| 55 | 미성동 타운~갈마마을 도로개설                     | 도시계획과 | 시설7급<br>이유청 | 시설<br>공사 |
| 56 | 송창17통 도로개설공사                         | 도시계획과 | 시설7급<br>이유청 | 시설<br>공사 |
| 57 | 소룡6통 소로개설공사                          | 도시계획과 | 시설8급<br>장재석 | 시설<br>공사 |
| 58 | 당복사거리 소방도로 개설공사                      | 도시계획과 | 시설8급<br>문 권 | 시설<br>공사 |
| 59 | 월명생태통로 조성공사                          | 도시계획과 | 시설7급<br>이기철 | 시설<br>공사 |
| 60 | 임피남상마을 도로개설공사                        | 도시계획과 | 시설7급<br>이유청 | 시설<br>공사 |
| 61 | 중앙동 중동장주변 도로개설공사                     | 도시계획과 | 시설7급<br>이유청 | 시설<br>공사 |
| 62 | 지방공단~제4토지간도로개설                       | 도시계획과 | 시설7급<br>이기철 | 시설<br>공사 |
| 63 | 문화동 군산상고옆 도로개설공사                     | 도시계획과 | 시설7급<br>이유청 | 시설<br>공사 |
| 64 | 옥구소도읍 육성사업                           | 도시계획과 | 시설7급<br>이기철 | 시설<br>공사 |
| 65 | 영동상가 주변 활성화 사업                       | 도시계획과 | 시설8급<br>김대영 | 시설<br>공사 |
| 66 | 군산시 경관조례                             | 도시계획과 | 시설9급<br>박진식 | 자치<br>법규 |
| 67 | 신역세권 명품 택지개발사업                       | 도시계획과 | 시설8급<br>조현섭 | 시설<br>공사 |
| 68 | 조선인프라 구축 및 저장물 정비                    | 건 설 과 | 시설7급<br>이원실 | 시설<br>공사 |
| 69 | 월포~원서포간 도로확포장 공사                     | 건 설 과 | 시설7급<br>백운초 | 시설<br>공사 |
| 70 | 야오선(군도8호) 도로 확포장 공사                  | 건 설 과 | 시설7급<br>백운초 | 시설<br>공사 |
| 71 | 옥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건 설 과 | 시설7급<br>백운초 | 시설<br>공사 |
| 72 | 성산도암~내흥동간 도로 확포장사업                   | 건 설 과 | 시설7급<br>이원실 | 시설<br>공사 |
| 73 | 금강철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 건 설 과 | 시설7급<br>황은호 | 시설<br>공사 |
| 74 | 간치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 건 설 과 | 시설7급<br>황은호 | 시설<br>공사 |
| 75 | 뜰아름 전원마을 조성사업                        | 건 설 과 | 시설7급<br>황은호 | 시설<br>공사 |
| 76 | 주요간선도로 디자인 가로등 설치                    | 건 설 과 | 공업7급<br>김근배 | 시설<br>공사 |
| 77 | 군산시국민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br>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 건 설 과 | 공업7급<br>김근배 | 자치<br>법규 |

|     |                          |         |             |          |
|-----|--------------------------|---------|-------------|----------|
| 78  |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 공영사업과   | 시설7급<br>양종호 | 시설<br>공사 |
| 79  | 수송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 공영사업과   | 시설7급<br>김지영 | 시설<br>공사 |
| 80  | 추모관 증축공사                 | 공영사업과   | 시설7급<br>서해성 | 시설<br>공사 |
| 81  | 비응도 군부대 부지매입             | 공영사업과   | 시설7급<br>이정규 | 시설<br>공사 |
| 82  | 군산시도시개발조례일부 개정조례         | 공영사업과   | 행정7급<br>강희경 | 자치<br>법규 |
| 83  | 오룡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 건 축 과   | 시설7급<br>오흥재 | 시설<br>공사 |
| 84  |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 건 축 과   | 시설7급<br>김정웅 | 시설<br>공사 |
| 85  |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 건 축 과   | 시설7급<br>박상열 | 자치<br>법규 |
| 86  | 군산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교통행정과   | 계약직<br>장종철  | 자치<br>법규 |
| 87  |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 교통행정과   | 계약직<br>장종철  | 자치<br>법규 |
| 88  | 상흥천 소하천 정비사업             | 재난관리과   | 시설8급<br>진승섭 | 시설<br>공사 |
| 89  | 외무장천 소하천 정비사업            | 재난관리과   | 시설8급<br>진승섭 | 시설<br>공사 |
| 90  | 해망9통 재해위험지구 정비           | 재난관리과   | 시설8급<br>권종득 | 시설<br>공사 |
| 91  | 개야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 재난관리과   | 시설8급<br>오근엽 | 시설<br>공사 |
| 92  | 선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            | 재난관리과   | 시설8급<br>권종득 | 시설<br>공사 |
| 93  | 동흥남동 재해위험지구 정비           | 재난관리과   | 시설8급<br>권종득 | 시설<br>공사 |
| 94  |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사업         | 토지정보과   | 시설7급<br>정길영 | 시설<br>공사 |
| 95  |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 보건사업과   | 보건7급<br>문다해 | 시설<br>공사 |
| 96  |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            | 수 도 과   | 시설8급<br>고승민 | 시설<br>공사 |
| 97  | 어청도 저수지 축조 공사            | 수 도 과   | 시설8급<br>허준선 | 시설<br>공사 |
| 98  |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         | 수 도 과   | 기능8급<br>박성우 | 자치<br>법규 |
| 99  |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 수 도 과   | 시설8급<br>허준선 | 자치<br>법규 |
| 100 |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 하 수 과   | 시설7급<br>한상봉 | 시설<br>공사 |
| 101 | 산북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 하 수 과   | 시설7급<br>한상봉 | 시설<br>공사 |
| 102 |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하 수 과   | 행정8급<br>김경남 | 자치<br>법규 |
| 103 | 제46회 도민체전대비 시설물 보수공사     | 체육시설관리과 | 시설7급<br>정병기 | 시설<br>공사 |
| 104 | 청소년회관 리모델링 공사            | 문화체육과   | 별정7급<br>안경열 | 시설<br>공사 |

|     |                               |         |             |          |
|-----|-------------------------------|---------|-------------|----------|
| 105 | 군산시 시세 조례                     | 세 무 과   | 행정7급<br>김현  | 자치<br>법규 |
| 106 | 군산시 시세 징수부과 규칙(일부개정)          | 세 무 과   | 행정7급<br>김현  | 자치<br>법규 |
| 107 |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재양성과   | 행정8급<br>손창균 | 자치<br>법규 |
| 108 |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 인재양성과   | 행정8급<br>손창균 | 자치<br>법규 |
| 109 | 군산시담배소매인지정기준등에관한규칙            | 지역경제과   | 기능8급<br>유현숙 | 자치<br>법규 |
| 110 | 군산시소비자기본조례                    | 지역경제과   | 행정7급<br>최병주 | 자치<br>법규 |
| 111 |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조례          | 문화체육과   | 행정9급<br>전경진 | 자치<br>법규 |
| 112 |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 문화체육과   | 별정7급<br>손병화 | 자치<br>법규 |
| 113 |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   | 문화체육과   | 행정9급<br>전경진 | 자치<br>법규 |
| 114 |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 체육시설관리과 | 행정8급<br>최대진 | 자치<br>법규 |
| 115 | 본체없는 PC 보급사업                  | 정보통신담당관 | 전산7급<br>박덕하 | 시설<br>공사 |
| 116 | 주민센터 신축                       | 총 무 과   | 행정7급<br>최동위 | 시설<br>공사 |
| 117 | 군산시 해양국토 이용 효율화방안 연구용역        | 기획예산과   | 행정7급<br>김문숙 | 연구<br>용역 |
| 118 | 비문해ZERO학습도시조성                 | 인재양성과   | 계약직<br>김호석  | 시책       |
| 119 | 발전소 주변 공원조성                   | 지역경제과   | 행정7급<br>김은양 | 시설<br>공사 |
| 120 | 그린건설기계종합기술지원사업                | 지역경제과   | 행정7급<br>손수경 | 시설<br>공사 |
| 121 |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             | 지역경제과   | 행정7급<br>손수경 | 시설<br>공사 |
| 122 | 군산시 근로자 장학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 지역경제과   | 행정7급<br>이영수 | 자치<br>법규 |
| 123 | 군산시 귀농 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 농 정 과   | 농업7급<br>김용곤 | 자치<br>법규 |
| 124 | 어민회관(동부, 서부) 신축               | 해양수산과   | 시설7급<br>김대영 | 시설<br>공사 |
| 125 | 가력도-비안도 도선 운항                 | 해양수산과   | 시설7급<br>박동래 | 시설<br>공사 |
| 126 | 어촌체험마을 조성(선유도)                | 해양수산과   | 행정7급<br>이승훈 | 시설<br>공사 |
| 127 | 어촌종합개발사업(선유, 무녀, 장자, 신시, 야미도) | 해양수산과   | 시설8급<br>김재강 | 시설<br>공사 |
| 128 | 월명공원 리모델링                     | 산림녹지과   | 시설8급<br>성상춘 | 시설<br>공사 |
| 129 | 동군산지역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 복지지원과   | 복지7급<br>손성우 | 시설<br>공사 |
| 130 |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 복지지원과   | 행정9급<br>안혜정 | 시설<br>공사 |
| 131 | 장사시설 이용객 편의 개선사업              | 복지지원과   | 복지7급<br>강창완 | 시설<br>공사 |

|     |                          |       |              |          |
|-----|--------------------------|-------|--------------|----------|
| 132 | 군봉배수지 촉구장 조성             | 문화체육과 | 행정8급<br>김태균  | 시설<br>공사 |
| 133 | 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 문화체육과 | 시설8급<br>박경민  | 시설<br>공사 |
| 134 | 새만금 주변 공원사업 조성           | 관광진흥과 | 시설8급<br>김민석  | 시설<br>공사 |
| 135 | 4계절 테마 생태관광지 지정 용역       | 관광진흥과 | 시설8급<br>김대환  | 연구<br>용역 |
| 136 | 폐기물자원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 자원순환과 | 행정7급<br>신인섭  | 시설<br>공사 |
| 137 | 구)군산역~2호 광장간 도로개설        | 도시계획과 | 시설7급<br>이유청  | 시설<br>공사 |
| 138 | 군장대교 건설                  | 도시계획과 | 시설7급<br>조현섭  | 시설<br>공사 |
| 139 |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             | 도시계획과 | 시설7급<br>조현섭  | 시설<br>공사 |
| 140 | 군산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 도시계획과 | 행정7급<br>김성준  | 자치<br>법규 |
| 141 |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            | 건설과   | 시설8급<br>전석   | 시설<br>공사 |
| 142 | 군산대 교차로 개선공사             | 건설과   | 시설7급<br>김영량  | 시설<br>공사 |
| 143 | 군산 공항로 개설사업              | 건설과   | 시설8급<br>최봉준  | 시설<br>공사 |
| 144 | 백토고개 사거리 지하차도 개설사업       | 건설과   | 시설7급<br>양중호  | 시설<br>공사 |
| 145 | 탄약고주변 주민이주단지 조성          | 건설과   | 시설7급<br>이정규  | 시설<br>공사 |
| 146 |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사업    | 건설과   | 전산 9급<br>이정민 | 시설<br>공사 |
| 147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건설과   | 행정 8급<br>이상연 | 시설<br>공사 |
| 148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시책       | 건설과   | 시설 7급<br>이원실 | 시설<br>공사 |
| 149 |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              | 건설과   | 시설7급<br>조현섭  | 시설<br>공사 |
| 150 | 경포천 재해예방(수해상습지)사업        | 건설과   | 시설7급<br>조현섭  | 시설<br>공사 |
| 151 | 보건지소,진료소 신축              | 건설과   | 보건7급<br>노진성  | 시설<br>공사 |
| 152 | 고군산군도 상수도시설 공사           | 건설과   | 시설7급<br>허준선  | 시설<br>공사 |
| 153 | 은파관광지구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       | 건설과   | 시설7급<br>황은호  | 시설<br>공사 |
| 154 | 경포경암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          | 건설과   | 시설7급<br>황은호  | 시설<br>공사 |
| 155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 건설과   | 공업7급<br>문상직  | 시설<br>공사 |
| 156 | 공공하수처리장소화조효율개선사업         | 건설과   | 공업7급<br>문상직  | 시설<br>공사 |
| 157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 건설과   | 시설7급<br>이승재  | 시설<br>공사 |
| 158 | 국민체육센터운동장확장조성            | 건설과   | 시설7급<br>정병기  | 시설<br>공사 |

|     |                         |       |              |          |
|-----|-------------------------|-------|--------------|----------|
| 159 |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원   | 건 설 과 | 행정8급<br>김주희  | 시책       |
| 160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건 설 과 | 행정8급<br>박혜리  | 시설<br>공사 |
| 161 | 제3차 도서 종합 개발 사업         | 건 설 과 | 시설7급<br>김대영  | 시설<br>공사 |
| 162 | 개야도 지방어항 개발             | 건 설 과 | 시설7급<br>김대영  | 시설<br>공사 |
| 163 | 어청도 도서개발 유형화사업          | 건 설 과 | 시설7급<br>김대영  | 시설<br>공사 |
| 164 | 선유도 관광기반 시설 조성          | 건 설 과 | 시설8급<br>유제완  | 시설<br>공사 |
| 165 | 말도 관광전망공원 조성            | 건 설 과 | 시설8급<br>유제완  | 시설<br>공사 |
| 166 | 시립 생태식물 양묘원 조성          | 건 설 과 | 전임다급<br>최경배  | 시설<br>공사 |
| 167 | 고령사회 대비 노인시설 확충         | 건 설 과 | 복지7급<br>손성우  | 시설<br>공사 |
| 168 |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             | 건 설 과 | 시설9급<br>백진숙  | 시설<br>공사 |
| 169 | 조각공원 조성                 | 건 설 과 | 전임다급<br>온혜영  | 시설<br>공사 |
| 170 | 진포해양 테마공원 조성공사          | 건 설 과 | 시설7급<br>이존화  | 시설<br>공사 |
| 171 | 금강호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 | 건 설 과 | 시설8급<br>조충현  | 연구<br>용역 |
| 172 | 은파관광지 조경휴게소 조성공사        | 건 설 과 | 시설9급<br>채병현  | 시설<br>공사 |
| 173 | 새만금 오토캠핑파크 조성           | 건 설 과 | 행정7급<br>이용진  | 시설<br>공사 |
| 174 | 임피 간이역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 건 설 과 | 행정7급<br>이용진  | 시설<br>공사 |
| 175 | 새만금 탁류길 조성              | 건 설 과 | 행정7급<br>이용진  | 시설<br>공사 |
| 176 | 군산 도시기본계획 변경            | 건 설 과 | 시설7급<br>최성운  | 연구<br>용역 |
| 177 |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           | 건 설 과 | 시설8급<br>김대환  | 시설<br>공사 |
| 178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   | 건 설 과 | 전임다급<br>박신   | 연구<br>용역 |
| 179 | 개정~옥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 건 설 과 | 시설7급<br>백운초  | 시설<br>공사 |
| 180 | 타운로 개설                  | 건 설 과 | 시설8급<br>오근엽  | 시설<br>공사 |
| 181 |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            | 건 설 과 | 시설8급<br>최봉준  | 시설<br>공사 |
| 182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      | 건 설 과 | 교통전문직<br>최기준 | 시설<br>공사 |
| 183 | 신흥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건 설 과 | 시설7급<br>오흥재  | 시설<br>공사 |
| 184 | 월명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건 설 과 | 시설7급<br>조현섭  | 시설<br>공사 |
| 185 |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            | 건 설 과 | 시설8급<br>허준선  | 시설<br>공사 |

|     |                                    |         |             |          |
|-----|------------------------------------|---------|-------------|----------|
| 186 | 내항주변 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 건 설 과   | 시설7급<br>이기철 | 시설<br>공사 |
| 187 |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 건 설 과   | 시설7급<br>이기철 | 시설<br>공사 |
| 188 | 새만금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 건 설 과   | 시설7급<br>이승재 | 시설<br>공사 |
| 189 |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 건 설 과   | 행정7급<br>박순양 | 자치<br>법규 |
| 190 |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 건 설 과   | 환경8급<br>전현정 | 시설<br>공사 |
| 191 | 구)군산역~중동사거리 도로개설                   | 건 설 과   | 시설7급<br>이유청 | 시설<br>공사 |
| 192 | 서부권도서관 조성                          | 건 설 과   | 사서7급<br>최지선 | 시설<br>공사 |
| 193 |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건 설 과   | 시설9급<br>최운찬 | 연구<br>용역 |
| 194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건 설 과   | 시설7급<br>오흥재 | 연구<br>용역 |
| 195 |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 건 설 과   | 행정9급<br>조상훈 | 자치<br>법규 |
| 196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                      | 건 설 과   | 시설7급<br>백운초 | 시설<br>공사 |
| 197 | 발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 건 설 과   | 시설7급<br>마일렬 | 시설<br>공사 |
| 198 |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                      | 건 축 과   | 건축7급<br>최운대 | 시설<br>공사 |
| 199 | 새만금 해넘이 명소화 사업                     | 관광진흥과   | 행정7급<br>이용진 | 시설<br>공사 |
| 200 | 산북동~유원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 도시계획과   | 시설7급<br>이유청 | 시설<br>공사 |
| 201 | 은파호수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 도시계획과   | 시설7급<br>이유청 | 시설<br>공사 |
| 202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 문화체육과   | 행정6급<br>문순철 | 시설<br>공사 |
| 203 | 서군산 축구장 조성                         | 문화체육과   | 시설9급<br>김성우 | 시설<br>공사 |
| 204 | 청암산 생태 녹색 테마숲 조성                   | 산림복지과   | 전임다급<br>최경배 | 시설<br>공사 |
| 205 | 구암 3.1 동산 성역화 사업                   | 산림복지과   | 복지8급<br>박귀호 | 시설<br>공사 |
| 206 |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조성사업                    | 농수산물유통과 | 농업7급<br>박경남 | 시설<br>공사 |
| 207 | 나운배수지 배수구역 조정사업                    | 수 도 과   | 시설7급<br>송영종 | 시설<br>공사 |
| 208 | 나운 월명지구 우수저류조 설치                   | 재난관리과   | 시설7급<br>오흥재 | 시설<br>공사 |
| 209 |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 건립 및 기술개발            | 지역경제과   | 행정7급<br>신남철 | 시설<br>공사 |
| 210 | 임피 농공단지 조성사업                       | 투자지원과   | 시설9급<br>이충조 | 시설<br>공사 |

|     |                                 |          |              |          |
|-----|---------------------------------|----------|--------------|----------|
| 211 | 비안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 해양수산과    | 시설7급<br>김대영  | 시설<br>공사 |
| 212 | 신시도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                | 해양수산과    | 행정7급<br>이승훈  | 시설<br>공사 |
| 213 | 방축도 야생초 자연공원마을 조성사업             | 해양수산과    | 시설8급<br>유제완  | 시설<br>공사 |
| 214 | 늘푸른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 시립도서관관리과 | 사서7급<br>최지선  | 시설<br>공사 |
| 215 |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2차및<br>U통합관제센터구축 | 교통행정과    | 전산 8급<br>이정민 | 시설<br>공사 |
| 216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 세 무 과    | 세무7급<br>최광식  | 자치<br>법규 |
| 217 | 군산시 시세조례(전부개정)                  | 세 무 과    | 세무7급<br>최광식  | 자치<br>법규 |
| 218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 세 무 과    | 세무7급<br>최광식  | 자치<br>법규 |
| 219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 규칙            | 세 무 과    | 세무7급<br>최광식  | 자치<br>법규 |
| 220 |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전부개정)            | 세 무 과    | 세무7급<br>최광식  | 자치<br>법규 |
| 221 |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 세 무 과    | 세무7급<br>최광식  | 자치<br>법규 |
| 222 |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전산화 용역사업         | 토지정보과    | 시설7급<br>김장섭  | 연구<br>용역 |
| 223 |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 지역경제과    | 행정7급<br>정용남  | 시설<br>공사 |

군산시 공고 제2012-1481호

#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및 폐기공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16.

## 군 산 시 장

- 1. 공인신조 및 폐기사유 : 인증기 교체 및 고장
- 2.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2. 7. 16.
- 3.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12. 7. 16.
- 4. 신규등록 및 폐기공인 인영

| 구분 | 관수부서 | 공 인 명              | 인 영  | 사유     |
|----|------|--------------------|--|--------|
| 신조 | 삼학동  | 군산시삼학동장인<br>민원사무전용 |  | 인증기 교체 |
| 폐기 | 삼학동  | 군산시삼학동장인<br>민원사무전용 |  | 인증기 고장 |

군산시 공고 제2012-1482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호선 외2개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7월 13일

1. 공람기간 : 도보계재 다음 날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공영사업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미장동, 조촌동, 사정동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대로1-1호선 외 2개노선 도시계획도로사업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구분     | 노 선 명  | 시설결정  |       | 실시계획 인가 |       |                     | 비 고 |
|--------|--------|-------|-------|---------|-------|---------------------|-----|
|        |        | 폭원(m) | 연장(m) | 폭원(m)   | 연장(m) | 면적(m <sup>2</sup> ) |     |
| 도<br>로 | 대로1-1  | 35    | 5,500 | 35      | 686   | 20,031              |     |
|        | 중로3-25 | 12    | 175   | 12      | 175   | 2,501               |     |
|        | 중로2-14 | 15    | 854   | 12      | 93    | 1,154               |     |
| 계      |        |       |       |         | 954   | 23,686              |     |

-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2) 성 명 : 군산시장(공영사업과)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7 ~ 2013. 1. 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공영사업과 (450-44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2-1499호

## 해망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

1. 해망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관계 서류를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군산시 건축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일  
군 산 시 장

### 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개요

- 1) 명 칭 : 해망 보금자리주택지구
- 2) 위 치 : 군산시 해망동 1004번지 일원
- 3) 면 적 : 22,620m<sup>2</sup>
- 4) 주택건설계획 : 장기공공임대주택 483호(영구임대주택 148호, 국민임대주택 335호)
- 5) 주 요 내 용 : 최고층수 15층 이하, 기타 주요내용 지구지정 제안서 열람

나. 지구지정 제안자 : 군산시장

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2. 7. 16 ~ 7. 30(공고한 날로부터 14일간)

라. 지구지정 제안서(도서포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군산시청 건축과(☎ 063-450-4475)

마.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과(☎ 063-450-4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